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9. 3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8.26. 김 수 진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.8.27.
- 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3.9.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수 진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
(안 제3조)

- 2)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3)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3조)
- 4)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- 5)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,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,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0 구청장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및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, 학교폭력대책지역협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,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·지원방안 등을 협의·조정 및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,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0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계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